

[별지 제24호서식] <개정 2013.3.23> [시행일:2012.7.1] 특별자치시와 특별
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

제	호	검사공무원증표	(사 진) 2cm×2.5cm
소 속			
직 위			
성 명			
유효기간	20 . .부터 20 . .까지		
위 사람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 발행위에 관한 업무사항을 검사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.			
년 월 일			
국 토 교 통 부 장 관			
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 [인]			
시 장 · 군 수			

64mm×91mm

(보존용지(1종) 120g/m²)